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Kofpi 한국임업진흥원장

1 시험일정

시행회차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8회 2차	'23.01.09(월) 09:00 ~ '23.01.13(금) 18:00	원서 접수 시 공고	'23.02.11(토)	'23.03.17(금)	
9회 1차	'23.05.15(월) 09:00 ~ '23.05.19(금) 18:00		'23.07.01(토)	'23.08.11(금)	
9회 2차	'23.09.04(월) 09:00 ~ '23.09.08(금) 18:00		'23.10.14(토)	'23.11.17(금)	

- ※ 시험일정은 국가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60일전 변경 공지)
- ※ 2024년 시험은 제10회 시험(1차, 2차)만 시행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23.12.1. 발표 예정)」 참고

가. 응시자격(아래 1), 2)를 모두 갖추어야 함)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관련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

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 별표 1 관련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함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 피해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함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산림청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음

나. 결격사유(「산림보호법」 제21조의5)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접수기간

회차	접수기간
제8회 2차	2023. 01. 09.(월) 09:00~2023. 01. 13.(금) 18:00
제9회 1차	2023. 05. 15.(월) 09:00~2023. 05. 19.(금) 18:00
제9회 2차	2023. 09. 04.(월) 09:00~2023. 09. 08.(금) 18:00

※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

-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에서 접수
- 응시자격 증빙 서류와 양성교육 교육이수 증명서를 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마감시각(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됨
- 접수 가능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무배경 상반신 정면 칼라사진(3.5cm × 4.5cm, jpg파일)

※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접수 불가 사진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 선글라스·모자를 착용한 사진
- 혼란한 배경 사진, 스냅사진, 기타 본인 식별이 어려운 사진

2)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시행기관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지불이 완료되어야 접수한 것으로 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우체국에 접수하여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자격 증빙서류와 양성교육 교육이수 증명서를 원서접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원서는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함(원서 출력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같이 출력하여 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3)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
- 응시자격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 응시 불가함
-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 기재사항 수정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변경,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행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47,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수수료 환불 기준 및 방법 [별첨 1] 참고

라.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수험표 출력 기간에 출력 또는 발급된 수험표를 시험당일 지참

4 시험과목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별표 1의2

구분	유형	시험과목(배점)	시험방법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① 수목병리학(100점) ② 수목해충학(100점) ③ 수목생리학(100점) ④ 산림토양학(100점) ⑤ 수목관리학(100점) 가. 비생물적피해(기상·산불·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객관식 5지 택일형
2차 시험	서술형 필기시험	①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100점)	논술형 및 단답형
	실기시험	②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10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 시험시간, 시험방식 등은 원서접수 시 상세공지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목록'을 기준으로 함

5**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4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술형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6**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가. 합격자 발표 일시

회차	발표 일시
제8회 2차	2023. 03. 17.(금) 18:00
제9회 1차	2023. 08. 11.(금) 18:00
제9회 2차	2023. 11. 17.(금) 18:00

나. 발표방법

-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에서 30일간 확인 가능

7 기타 사항

가. 장애인, 임산부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후 제공
- ※ 원서접수 종료일로부터 4일 이내에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를 제출**

나. 1차 시험 면제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함
-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함
- ※ 단, 면제기간 만료일이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의 시작일을 포함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회차	합격일자	면제기간	응시가능 회차	비고
제4회 1차	'21. 02. 22.	'21. 02. 22. ~ '23. 02. 21.	제8회 2차	'23년 면제기간 만료
제5회 1차	'21. 08. 02.	'21. 08. 02. ~ '23. 08. 01.		
제6회 1차	'21. 12. 27.	'21. 12. 27. ~ '23. 12. 26.	제9회 2차	
제7회 1차	'22. 07. 01.	'22. 07. 01. ~ '24. 06. 30.	-	-

다. 아래와 같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시 수험자
안내 사항을 추가 공지하여 안내

- 1)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 2) 국가 위기단계,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발생 시

라. 2024년 나무의사 자격시험 사전공지 안내

- 2024년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제10회 시험(1차, 2차)만 시행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23.12.1.
발표 예정)」 참고

나무의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험 시행·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을 참조하시거나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1600-3248, 나무의사 4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